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3,322,261	8,199,668
일반회계	243,729,982	7,311,899
특별회계	29,592,279	887,768
기타특별회계	29,592,279	887,768
상수도특별회계	11,015,867	330,47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6,554	19,39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78,826	47,36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19,322	15,580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5,381,710	461,45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00,000	12,000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0	1,500

제 2 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23,51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 의무부담액(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